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약관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7개 정부출자기관 총 30개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중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행정규제 개혁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자와 관련된 계약체결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행이나 정보화 시대 등 현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동 조사에서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공기업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우선 불공정 약관조항

으로 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조항과 계약의 일방적 해지조항,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재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하자보증기간과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또 계약완료단계에서 하자담보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제조항 및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다. 그리고 경쟁제한조항,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약관조항, 정보화시대 및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국제관행이나 규범과 거리가 있는 조항 등 제도개선 등을 위한 직권인지사항도 해당된다.

동 조사결과는 2000년 10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2000년 11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이나 삭제 등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공기업의 약관종류별 이용약관 수〉

구 분	조사대상 공기업	약관종류				이용약관 수 (총합계)
		공사	물품	용역	기타	
공공부문	정부투자기관(13개)	19	17	14	83	133
	정부출자기관(10개)	13	12	16	64	105
	금융분야(7개)	(여신)166	(수신)129	(외국환)33	(신탁·기타)	453
계						691

〈조사대상 업체명〉

소 관	기 관 명
재경부	한국조폐공사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투자기관 계 (13)	
재경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문광부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정통부	한국전기통신공사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건교부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기관 계 (17)	
합 계 (30)	

부실기업 M&A의 경쟁제한성 사전검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부실기업 매각관련 경쟁제한성 사전검토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

동 방안의 마련을 위해 공정위는 6월 27일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기업 매각관련 기업결합심사방향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는 부실기업 매각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실시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이를 금지할 경우 매각절차의 반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 부실기업의 회생지연 등 문제점이 많고, 현행법상 M&A 추진기업은 M&A 절차의 완료 이전에 어느 때라도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기업들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M&A의 기업결합 심사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실기업 매각을 위한 입찰 등 관련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사후심사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전체 기업결합	393	418	486	557
경쟁제한적 M&A	1	1	4	5

※ 경쟁제한적 M&A : 시장집중도가 높고 신규진입 또는 해외경쟁도입도 미흡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M&A로서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예외인정을 받은 건수임

사전검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금융기관은 부실기업 매각시 다음의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는데 제1방식은 당해기업이 직접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검토를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단은 입찰참여기업이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입찰설명회 등을 활용하거나 입찰참여회사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는 별도 공문 발송하고 입찰참여기업이 입찰서 제출시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방식은 채권단이 입찰참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쟁제한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으로 입찰의향을 접수한 후 입찰참여회사의 명단을 첨부하여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의뢰해야 한다.

공정위는 입찰참여회사나 채권단이 사전에 경쟁제한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최단 기일 내에 경쟁제한성 판단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채권단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최대한 참고하여야 한다. 이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사전검토절차를 거쳤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식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채권단이 임의적으로 협조할 사안이나 사전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사후에 기업결합 금지 등의 시정조치로 재입찰의 실시 등 매각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단의 입장에서도 사전검토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료품 관계단체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신규제정하여 음식료품업종의 원·수급사업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4개 관계단체에

협조요청하였으며, 개별 사업자에게도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원사업자가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 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처리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음식료업은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수급사업자가 영세하여 하도급거래시 계약서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동 계약서의 보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이로써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주요 내용 ◆

-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재규정 준수(제1조)
- 원사업자의 구체적인 부당반품행위를 예시(제7조)
 - 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등
- 목적물의 검사방법과 검사 결과 통지의 의무화(제12조)
 -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 서면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간주
-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3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특정한 날로 정함
 - 납품과 관련없는 채권의 상계를 금지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을 의무화
- 원사업자의 구체적인 부당감액행위를 예시(제14조)
 - 하도급대금의 총액을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등
- 산업재산권 보호(제15조)와 기밀유지의무 명시(제16조)
-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명시(제18조)
 - 즉시 해제·해지의 요건 : 계약이행 곤란이 확정적인 사유(파산, 해산 등)
 - 통산 해제·해지 : 상당한 기간의 최고 필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한 당면 대책

최근 인터넷 사용 인구 및 쇼핑몰업체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방식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 소재와 주문상품의 실체확인이 어려운 점 등으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당면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은 방문판매법에 의거 신고하

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업자를 파악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소비자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지자체 등을 통해 계도토록 하고, 국세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중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대히 처리하도록 관련기관에 협조요청하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 직권조사 실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자와 주요 검색엔진에 쇼핑몰로 링크되어 있는 사업자와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0년 8월에서 9월중 사이버 소비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조사의 내용으로는 자신의 상품가격과 타 사업자의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비교표시하여 자신의 상품가격이 싼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상품의 품질, 효능, 성능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 기타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표시·광고 등이 있다.

▶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소비자가 주의하면 온라인거래가 오프라인의 거래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과 사기사이트 구별방법,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시 구제를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을,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의 신고의무, 관련 법률상 금지행위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금년 9월까지 개발, 관련 사업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CD·책자로 보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금년중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2001년 1/4분기중에 『전자상거래 감시망 및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검색엔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과 같은 유관단체 감시활동의 네트워크화를 구현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주)SDN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인 (주)SDN의 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하였다.

(주)SDN은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주식가격의 비중)이 68.8%로서,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현재는 유가증권투

사업 및 유선방송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SDN은 3차례에 걸쳐 세종증권(주)의 주식 39.14%를 장내 매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취득함과 아울러, '99년 12월 21일 (주)세종기술투자의 주식 40%를 추가 취득하여 지주

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세종증권(주) 및 (주)세종기술투자 등 2개의 자회사와 세종투자신탁운용(주) 1개의 손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SDN에 대한 심사 결과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0년 6월 24일 신고수리하였다.

〈(주)SDN의 재무상황('99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A)	부채총계(B)	자본총계(C)	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D)	지주비율(D/A)	부채비율(B/C)
180,919	87,022	93,897	124,557	68.8	92.7

2000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0일, 2000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의하면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45.9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하였으나, 이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계열확장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출자총액증가율이 전년의 68.9%에서 53.5%로 둔화되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전년의 32.5%와 비슷한 수준(32.9%)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영위업종 수는 15.3개로 전년의 19.2개보다 3.9개, 계열사 수는 비주력부문의 계열사 정리 등으로 686개에서 544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출자증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8.2조원), 정보통신분야 참여 및 구조조정 출자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는 출자가 많은 「(주)대우」가 신규지정되고 출자가 적은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는 등 신규지정·지정제외(7개 집단)에 따른 3.8조원의 출자 증가와 구조조정

관련 출자인 한화의 1.1조원을 포함한 액수이다.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증가한 주요인은 유상증자 참여(45.6%), 주식취득(41.4%), 회사설립(12.2%)의 순이며, 유상증자 참여가 전체 출자증가(16.0조원)의 4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부채비율 축소)을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동 증자물량의 상당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지분율이 43.4%로 지난 해의 50.5%에 비해 7.1%p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소유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의 44.1%에서 36.6%로 7.5%p 감소,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4%에서 4.5%로 0.9%p 감소하여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일인 지분율은 2.0%에서 1.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과도한 계

열사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자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지분율이 대폭 하락한 이유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매각·합병 등으로 계열제외되거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기인한다. 이 중 「현대」, 「LG」는 계열사 정리를, 「현대」, 「LG」, 「SK」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증가가 대부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정보통신분야 주식취득(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하나로통신), 구조조정 출자((주)한화의 한화에너지 물적분할)와 관련되어 있어 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내부지분율은 지난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전

체적으로 소유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면 더욱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선단식 기업경영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의 억제를 통한 소유구조의 꾸준한 개선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 제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식소유현황 분석을 토대로 2001년 4월 제도 시행 이전에 출자한도 초과분의 자율 해소를 유도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억제를 위한 등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는 본지의 '부록' (107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2000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회시간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6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4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4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0년 7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0년 6월 1일 560개사에서 570개사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4대 기업집단에서 2개사, 5대 이하 기업집단에서 8개사가 증가하였다.

◇ 2000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0. 6.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7.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기타	계		
전 체	560	7	4	3	14	1	1	1	1	4	10	570
1~4대	169	3	-	-	3	-	-	-	1	1	2	171
5~30대	391	4	4	3	11	1	1	1	-	3	8	399

◆ 2000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 편입 : 14개사(지분취득 4, 회사설립 7, 기타 3)
- ◎ 제외 : 4개사(지분매각 1, 합병 1, 청산 1, 친족분리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삼성	(주)삼성 인터넷서널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회사설립	-	-	-	2
	(주)크레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설립				
엘지	(주)한국인터넷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사업	회사설립	(주)아워홈	외식업	친족분리	0
금호	-	-	-	서울화인테크(주)	고무반제품 제조업	지분매각	△1
한화	투어몰닷컴(주)	인터넷 일반여행업	회사설립	경인해운(주)	해상운송업	청산종결	1
	(주)엔갤러리아	통신판매업	회사설립				
동양	(주)이씨비엘	바둑관련인터넷 방송서비스업	주식취득	-	-	-	1
제일 제당	(주)씨제이 삼구쇼핑	유통관련종합 유선방송업	주식취득	씨제이 폴든빌리지(주)	영화구매·상영업	씨제이빌리지 (주)에 합병	5
	제일방송(주)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	(주)씨제이삼구 쇼핑 자회사				
	(주)양천넷	종합유선방송업	(주)씨제이삼구 쇼핑 자회사				
	(주)아이삼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주)씨제이삼구 쇼핑 자회사				
	이클라인(주)	화물운송업	주식취득				
	푸드빌(주)	외식업	회사설립				
대우 전자	(주)테크라프	리튬بات데리 제조 및 판매업	주식취득	-	-	-	1
현대산업 개발	아이투자신탁 운용(주)	투자신탁 운용업	회사설립	-	-	-	1
계	14			4			10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대우 승진

이삼봉(경쟁국 공동행위과장)
김태구(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장)

◎ 서기관대우 승진

최무진(위원장실)
김성삼(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승철(독점국 독점정책과)
노상섭(독점국 독점정책과)
정진욱(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한경호(조사국 조사기획과)
박도하(조사국 조사1과)
김순철(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
박상현(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

◎ 국제전문관 임명

김의환(정책국 국제업무1과 사무관)
이필현(정책국 국제업무1과 사무관)
현성복(정책국 국제업무2과 사무관)

◎ 해외훈련 파견

윤현(정책국 총괄정책과 서기관)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2000. 7. 19 ~ 2002. 5. 18
이황(정책국 제도개선과 사무관)
- 미국 콜롬비아대학
2000. 7. 30 ~ 2001. 7. 29

◎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2000. 6. 25 ~ 2003. 1. 10
김관보(가톨릭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고동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태한(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연호(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종원(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은섭(아주종합법무법인 변호사)

◎ 공정거래서비스현장 민간심의위원 위촉

- 2000. 7. 1 ~ 별도발령시까지
홍순영(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
박인례(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